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08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2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7190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08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재산세 등 93,630,100원의 부과처분 중 34,26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6행의 "을 제5, 6호증"을 "을 제3, 5, 6호증"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원고가"를 "C가"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1행의 "볼 수 없는 점"을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4행의 "타당하므로"를 "타당하고,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판매 또는 자동차부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자동차 수리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08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08

별지1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순번	과세대상	과세표준	재산세등 과세내역 (단위: 원)			
			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1	B에 있는 E호	118,775,764	2,177,570	1,650,980	229,660	296,930
2	B에 있는 F호	540,110,683	10,098,660	7,507,530	1,240,860	1,350,270
3	B에 있는 G호	584,297,560	10,929,380	8,121,730	1,346,910	1,460,740
4	B에 있는 H호	141,394,792	2,602,800	1,965,380	283,940	353,480
5	B에 있는 I호	529,828,376	9,905,360	7,364,610	1,216,180	1,324,570
6	B에 있는 J호	210,382,480	3,608,600	2,681,670	449,510	477,420
7	B에 있는 K호	557,977,112	10,434,560	7,755,880	1,283,740	1,394,940
8	B에 있는 L호	182,682,192	3,379,010	2,539,280	383,030	456,700
9	B에 있는 M호	557,977,112	10,434,560	7,755,880	1,283,740	1,394,940
10	B에 있는 N호	192,509,240	3,272,600	2,433,240	406,620	432,740
11	B에 있는 O호	921,173,853	17,262,650	12,804,310	2,155,410	2,302,930
12	B에 있는 지하 E호	215,617,248	2,300,090	1,582,000	462,070	256,020
13	B에 있는 지하 F호	392,831,824	7,224,260	5,372,390	887,390	964,480
합 계		5,145,558,236	**93,630,100**	**69,534,880**	**11,629,060**	**12,466,160**

끝.